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p>제2조(적용범위)</p> <p>① (생략)</p> <p>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의해 제11조, 제16조에서 정한 안전점검 시기 및 내용에 준하여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③ (생략)</p>	<p>제2조(적용범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u>」에 따른 1·2·3종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의해 <u>본 지침의</u>-----</p> <p>-----.</p> <p>③ (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청 수정 및 제 3종 시설물 가
<p>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로 <u>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u>을 말한다.</p> <p>2. (생략)</p> <p>3. “관리주체”란 해당시설의 소유자 또는 <u>관계법령에 따라</u>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p> <p>4.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u>개량·보수·보강</u>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p> <p>5. ~ 10. (생략)</p> <p><신 설></p>	<p>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 -----<u>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u>-----.</p> <p>2. (현행과 같음)</p> <p>3. ----- -----<u>관계법령, 관리계약 등에</u>-----</p> <p>4. ----- ----- -----<u>개량·보수·보강·개축</u>-----.</p> <p>5. ~ 10. (현행과 같음)</p> <p>11. “<u>외관조사망도</u>”란 <u>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를 평면상에 결합, 손상, 균열 등의 위치 및 내용을 표기한 것을 말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청 수정 ○ 항만법 상 안전점검 관리책임자인 관리주체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의 수정 ○ 유지관리의 한 형태인 “개축” 추가 ○ 외관조사망도 정의 추가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2장 시설물 관리일반 제4조(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① (생략) <신설></p>	<p>제2장 시설물 관리일반 제4조(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수립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p>제5조(설계도서 등의 보존) 관리주체는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준공도서, 안전점검결과, 보수·보강결과 등 별표 1에 명시된 자료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p>	<p>제5조(설계도서 등의 보존) ----- ----- ----- <u>따른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p>제6조(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실적 제출)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할 경우 별표 1에 명시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실적 제출) ----- ----- ----- <u>하며, 제출방법은 세부 지침에 따른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의 실적 제출방법에 있어서 세부적인 설명을 위한 근거 마련
<p>제8조(안전점검 일반) ① ~ ② (생략) <신설></p> <p>③ 안전점검의 실시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④ 안전점검을 위한 조사·시험 항목을 선정할 때</p>	<p>제8조(안전점검 일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안전점검에 참여한 책임기술자 등은 점검결과에 실명을 기재하고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④ ----- 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 실명제 및 사후관리실명제 관련 사항 추가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3.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p> <p>⑤ 안전점검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p> <p>⑥ -----</p> <p>-----.</p> <p>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p>	<p>○ 관련법 개정에 따른 명칭 및 조항 변경</p> <p>○ 점검 환경에 따라 원활한 점검장비 활용 및 적용이 가능토록 예외 조항 추가</p>
<p>제4장 안전점검 방법</p> <p>제10조(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한다.</p>	<p>제4장 안전점검 방법</p> <p>제10조(안전점검의 종류)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p>	<p>○ 관련법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명칭 수정</p>
<p>제11조(안전점검 실시 시기)</p> <p>① (생략)</p> <p>②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p>	<p>제11조(안전점검 실시 시기)</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관리주체 -----</p>	<p>○ 실질적 안전점검의 책임을 가지는 “관리주체”로 변경</p>
<p>제12조(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책임하(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에 실시되어야 한다.</p>	<p>제12조(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p>	<p>○ 관련법 개정에 따른 명칭 등 수정 및 자구 수정</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13조(정기점검 수행방법) ① 정기점검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p> <p>② (생략)</p>	<p>제13조(정기안전점검 수행방법) ① <u>정기안전점검</u></p> <p>② (현행과 같음)</p>	<p>○ 관련법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명칭 수정</p>
<p>제14조(정밀점검 수행방법) ①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외관조사와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p> <p>② (생략)</p> <p>③ 정밀점검에서는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제9조제3항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④ 정밀점검 실시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기술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14조(정밀안전점검 수행방법) ① <u>정밀안전점검</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정밀안전점검에서는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u></p> <p>④ <u>정밀안전점검</u></p> <p>⑤ <u>현장조사 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p>○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명칭 수정</p> <p>○ 항만시설물 내진성능 강화를 위하여 검토대상(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 추가</p> <p>○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명칭 수정</p> <p>○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 조치 관련 사항 추가</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32조(공법선정) ① (생략) <신설></p>	<p>제32조(공법선정 및 유지관리방안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u>관리주체는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u> 1.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채보다는 주 부채를 우선하여 실시 2.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채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3. 발생위치 및 시기(추정), 발생규모, 진행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실시 ③ <u>관리주체는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방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대상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보강시 우선순위 명시 ○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수 있는 유지관리방안 작성의 근거마련
<p>제8장 보고서 작성 제33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u>중심으로</u>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p>	<p>제8장 보고서 작성 제33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 ----- ----- ----- <u>중심으로 별표 11의 각 항목에 따라</u>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화하여 별표로 작성
<p>제9장 행정사항 제34조(권한의 위임) (생략) 제3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9장 행정사항 제34조(권한의 위임) (현행과 같음) 제35조(재검토기한) ----- ----- -- <u>고시</u> ----- <u>2020년 7월 1일</u> ----- ----- <u>6월 30일</u>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검토기한을 고시되는 시점으로 수정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부칙 <u>제1조(시행일)</u>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p><u>제2조(경과조치)</u>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기산일은 「항만법 시행령」 시행 전에 설치된 항만 시설에 대하여는 영 시행일(2014.09.25.)을 항만시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p>	<p>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법인 「항만법 시행령」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으로 삭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별표2] <u>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준비사항(제8조제4항 관련)</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점검 과업지시서 등의 작성: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발주할 때에는 안전점검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본 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과업지시서 등의 검토: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별표 8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당해 시설물의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 내용이 본 지침 및 세부지침과 위배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보고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수립 4. 조사·시험 항목의 선정 5. 경험과 기술을 갖춘 기술 인력과 소요 장비 	<p>[별표2] <u>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준비사항(제8조제4항 관련)</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점검 과업지시서 등의 작성: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발주할 때에는 안전점검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본 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과업지시서 등의 검토: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별표 8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해당 시설물의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 내용이 본 지침 및 세부지침과 위배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보고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수립 4. 조사·시험 항목의 선정 5. 경험과 기술을 갖춘 기술 인력과 소요 장비 6. 해당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관련 자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수정 ○ 안전점검시 설계도서 등 준비사항 추가 												
<p>[별표3] <u>시설물별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9조제3항 관련)</u></p> <table border="1" data-bbox="170 1031 969 1374"> <thead> <tr> <th>시설물명</th> <th>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th> </tr> </thead> <tbody> <tr> <td>1. 공통 사항</td> <td>-시설물기초 세굴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중성화(탄산화)에 따른 내력손실 -절토·성토 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td> </tr> <tr> <td>2. 계류/외곽시설</td> <td>-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잔교·시설 파손 및 결함 -케이슨 구조물의 파손 -<u>안벽의 법선변위</u> 및 침하</td> </tr> </tbody> </table>	시설물명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1. 공통 사항	-시설물기초 세굴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중성화(탄산화)에 따른 내력손실 -절토·성토 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2. 계류/외곽시설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잔교·시설 파손 및 결함 -케이슨 구조물의 파손 - <u>안벽의 법선변위</u> 및 침하	<p>[별표3] <u>시설물별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9조제3항 관련)</u></p> <table border="1" data-bbox="1005 1031 1805 1374"> <thead> <tr> <th>시설물명</th> <th>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th> </tr> </thead> <tbody> <tr> <td>1. 공통 사항</td> <td>-시설물기초 세굴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중성화(탄산화)에 따른 내력손실 -꺾기·삐기 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td> </tr> <tr> <td>2. 계류/외곽시설</td> <td>-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잔교·시설 파손 및 결함 -케이슨 구조물의 파손 -기준선변위 및 침하</td> </tr> </tbody> </table>	시설물명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1. 공통 사항	-시설물기초 세굴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중성화(탄산화)에 따른 내력손실 - 꺾기·삐기 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2. 계류/외곽시설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잔교·시설 파손 및 결함 -케이슨 구조물의 파손 - 기준선 변위 및 침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의 사용용어와 통일하여 혼선방지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의 사용용어와 통일하여 혼선방지
시설물명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1. 공통 사항	-시설물기초 세굴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중성화(탄산화)에 따른 내력손실 -절토·성토 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2. 계류/외곽시설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잔교·시설 파손 및 결함 -케이슨 구조물의 파손 - <u>안벽의 법선변위</u> 및 침하													
시설물명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1. 공통 사항	-시설물기초 세굴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중성화(탄산화)에 따른 내력손실 - 꺾기·삐기 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2. 계류/외곽시설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잔교·시설 파손 및 결함 -케이슨 구조물의 파손 - 기준선 변위 및 침하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3. 교량	-교대·교각의 부등침하 및 균열 발생 -교좌장치(교량받침)의 파손 -주요 구조부위 철근량 부족 -주형의 균열 심화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 분리 -철강재 용접부의 불량용접	3. 교량	-교대·교각의 부등침하 및 균열 발생 -교좌장치(교량받침)의 파손 -주요 구조부위 철근량 부족 -강교 접합부의 볼트손상, 이완, 탈락 -주형의 균열 심화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 분리 -철강재 용접부의 용접불량	○ 교량 시설물의 점검사항 추가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의 사용용어와 통일하여 혼선방지 ○ 항만시설물 상존재하지 않는 터널 삭제 및 지구 수정
4. 건축물	- 기동·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실로 인한 내력 상실 -주요구조부재의 과도한 변형 및 균열 심화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누수·부식 등에 의한 시설물의 기능 상실	4. 건축물	- 기동·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실로 인한 내력 상실 -주요구조부재의 과도한 변형 및 균열 심화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누수·부식 등에 의한 시설물의 기능 상실	
5. 터널	-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 벽채균열 심화 및 탈락 - 복공부위 심한 누수 및 변형			
[별표4] 안전점검 실시 시기(제11조제1항 관련)		[별표4] 안전점검 실시 시기(제11조제1항 관련)		○ 관련법 개정에 따른 명칭 수정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정기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항만시설이 아닌 시설이 구조 및 형태의 변경으로 항만시설이 된 경우에는 구조 및 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부터 1년 이내 최초 정기점검일부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다만, 태풍 또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시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정밀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36조의2(해양시설의 안전점검) 등 타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 매년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의 정기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정기 안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항만시설이 아닌 시설이 구조 및 형태의 변경으로 항만시설이 된 경우에는 구조 및 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부터 1년 이내 최초 정기안전점검일부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다만, 태풍 또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시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36조의2(해양시설의 안전점검) 등 타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 매년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정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파제, 파제제, 안벽(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에 한정한다), 돌핀(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에 한정한다), 물양장(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에 한정한다) 및 그 밖의 계류시설 중 여객 이용시설 - 최초 정밀점검: 해당 항만시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6년 이내 - 정기 정밀점검: 최초 정밀점검일부터 6년마다 1회 이상 방사제, 방조제, 도류제, 호안,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안벽(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은 제외한다), 물양장(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은 제외한다), 잔교, 부잔교, 선착장 - 최초 정밀점검: 해당 항만시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내 - 정기 정밀점검: 최초 정밀점검일부터 10년마다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 방파제, 파제제, 안벽(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에 한정한다), 돌핀(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에 한정한다), 물양장(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에 한정한다) 및 그 밖의 계류시설 중 여객 이용시설 - 최초 정밀안전점검: 해당 항만시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6년 이내 - 정기 정밀안전점검: 최초 정밀안전점검일부터 6년마다 1회 이상 (일반) 방사제, 방조제, 도류제, 호안,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안벽(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은 제외한다), 물양장(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은 제외한다), 잔교, 부잔교, 선착장 - 최초 정밀안전점검: 해당 항만시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내 - 정기 정밀안전점검: 최초 정밀안전점검일부터 10년마다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 개정에 따른 명칭 수정 	
긴급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양수산부장관(관계 행정기관의 장 포함)이 시설물에 대한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연재해로 시설물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붕괴, 침하,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점검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양수산부장관(관계 행정기관의 장 포함)이 시설물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연재해로 시설물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붕괴, 침하,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 		
[별표5] 긴급점검의 구분(제15조 제2항 관련)		[별표5] 긴급안전점검 의 구분(제15조 제1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 개정에 따른 명칭 수정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손상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보수·보강의 긴급성, 보수·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손상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보수·보강의 긴급성, 보수·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점검은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제한중인 시설물의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점검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특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점검은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제한중인 시설물의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점검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별표6]</p> <p><신설></p>	<p>[별표6]</p> <p style="text-align: center;"><u>안전점검의 과업내용(제16조 관련)</u></p> <p>1. 정기안전점검의 과업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1003 331 1807 885"> <thead> <tr> <th data-bbox="1003 331 1155 368">과업구분</th> <th data-bbox="1155 331 1807 368">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003 368 1155 488">1. 기본과업</td> <td data-bbox="1155 368 1807 4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td> </tr> <tr> <td data-bbox="1003 488 1155 608">가. 자료 수집 및 분석</td> <td data-bbox="1155 488 1807 6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 준공도면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td> </tr> <tr> <td data-bbox="1003 608 1155 727">나. 현장조사</td> <td data-bbox="1155 608 1807 7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 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td> </tr> <tr> <td data-bbox="1003 727 1155 818">다. 점검결과</td> <td data-bbox="1155 727 1807 8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관조사 결과 분석 ◦ 시설물 전체 책임기술자의 소견 및 조치계획 등 </td> </tr> <tr> <td data-bbox="1003 818 1155 885">라. 보고서 작성</td> <td data-bbox="1155 818 1807 8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작성 </td> </tr> </tbody> </table>	과업구분	내용	1. 기본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 준공도면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 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점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관조사 결과 분석 ◦ 시설물 전체 책임기술자의 소견 및 조치계획 등 	라.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작성 	<p>○ 안전점검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정기안전점검 사항 추가</p>
과업구분	내용													
1. 기본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 준공도면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 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점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관조사 결과 분석 ◦ 시설물 전체 책임기술자의 소견 및 조치계획 등 													
라.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작성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과업내용(제16조제2항 관련)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과업내용		○ 관련법 개정에 따른 명칭 수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업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 기본과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 필요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td> </tr> <tr> <td>가. 자료 수집 및 분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td> </tr> <tr> <td>나. 현장 조사 및 시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 노출 등 강재 구조물: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석재 구조물: 유실, 교란, 세굴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수중조사(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실시) 측량(외곽시설 또는 계류시설인 경우 실시, 단 상치콘크리트가 없거나 부잔교인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중측량(상치콘크리트 상면) 법선측량(상치콘크리트 법면) </td> </tr> <tr> <td>다. 상태 평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관조사결과 분석 현장 재료시험결과 분석 측량결과 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td> </tr> <tr> <td>라. 보고서 작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td> </tr> </tbody> </table>	과업구분	내용	1. 기본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 필요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 조사 및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 노출 등 강재 구조물: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석재 구조물: 유실, 교란, 세굴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수중조사(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실시) 측량(외곽시설 또는 계류시설인 경우 실시, 단 상치콘크리트가 없거나 부잔교인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중측량(상치콘크리트 상면) 법선측량(상치콘크리트 법면) 	다. 상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관조사결과 분석 현장 재료시험결과 분석 측량결과 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업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 기본과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 필요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td> </tr> <tr> <td>가. 자료 수집 및 분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등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td> </tr> <tr> <td>나. 현장 조사 및 시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 노출 등 강재 구조물: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석재 구조물: 유실, 교란, 세굴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td> </tr> <tr> <td>다. 상태 평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관조사결과 분석 현장 재료시험결과 분석 대상 구조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td> </tr> <tr> <td>라. 보고서 작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td> </tr> </tbody> </table>	과업구분	내용	1. 기본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 필요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등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 조사 및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 노출 등 강재 구조물: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석재 구조물: 유실, 교란, 세굴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다. 상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관조사결과 분석 현장 재료시험결과 분석 대상 구조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과업구분	내용																								
1. 기본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 필요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 조사 및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 노출 등 강재 구조물: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석재 구조물: 유실, 교란, 세굴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수중조사(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실시) 측량(외곽시설 또는 계류시설인 경우 실시, 단 상치콘크리트가 없거나 부잔교인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중측량(상치콘크리트 상면) 법선측량(상치콘크리트 법면) 																								
다. 상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관조사결과 분석 현장 재료시험결과 분석 측량결과 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과업구분	내용																								
1. 기본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 필요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등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 조사 및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 노출 등 강재 구조물: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석재 구조물: 유실, 교란, 세굴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다. 상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관조사결과 분석 현장 재료시험결과 분석 대상 구조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업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2. 선택과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어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td> </tr> <tr> <td>가. 자료 수집 및 분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지반·수리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td> </tr> <tr> <td>나. 현장 조사 및 시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td> </tr> <tr> <td>다. 안전성 평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해석 등 안전성 평가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 평가 </td> </tr> <tr> <td>라. 보수·보강 방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보강 방법 제시 </td> </tr> </tbody> </table>	과업구분	내용	2. 선택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어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지반·수리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나. 현장 조사 및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다. 안전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해석 등 안전성 평가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 평가 	라. 보수·보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보강 방법 제시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업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2. 선택과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어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td> </tr> <tr> <td>가. 자료 수집 및 분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지반·수리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td> </tr> <tr> <td>나. 현장 조사 및 시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수중조사(간조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실시, 하자담보기간 완료 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서 실시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중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설 등으로 해저면 변동이 발생한 경우 - 시설물에 인접하여 신규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 이전 수중조사 결과, 기초부의 세굴, 손상 등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 측량(외곽시설 또는 계류시설인 경우 실시, 단 상치콘크리트 가 없거나 부잔교인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측량 - 기준선측량 그 밖에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td> </tr> <tr> <td>다. 안전성 평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해석 등 안전성 평가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 평가 </td> </tr> <tr> <td>라. 보수·보강 방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보강 방법 제시 </td> </tr> </tbody> </table>	과업구분	내용	2. 선택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어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지반·수리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나. 현장 조사 및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수중조사(간조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실시, 하자담보기간 완료 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서 실시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중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설 등으로 해저면 변동이 발생한 경우 - 시설물에 인접하여 신규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 이전 수중조사 결과, 기초부의 세굴, 손상 등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 측량(외곽시설 또는 계류시설인 경우 실시, 단 상치콘크리트 가 없거나 부잔교인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측량 - 기준선측량 그 밖에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다. 안전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해석 등 안전성 평가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 평가 	라. 보수·보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보강 방법 제시
과업구분	내용																									
2. 선택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어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지반·수리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나. 현장 조사 및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다. 안전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해석 등 안전성 평가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 평가 																									
라. 보수·보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보강 방법 제시 																									
과업구분	내용																									
2. 선택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어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지반·수리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나. 현장 조사 및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수중조사(간조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실시, 하자담보기간 완료 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서 실시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중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설 등으로 해저면 변동이 발생한 경우 - 시설물에 인접하여 신규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 이전 수중조사 결과, 기초부의 세굴, 손상 등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 측량(외곽시설 또는 계류시설인 경우 실시, 단 상치콘크리트 가 없거나 부잔교인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측량 - 기준선측량 그 밖에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다. 안전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해석 등 안전성 평가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 평가 																									
라. 보수·보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보강 방법 제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신설></p>	<p>[별표11]</p> <p>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3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1003 292 1173 328">구분</th> <th data-bbox="1173 292 1809 328">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003 328 1173 488">1. 서두</td> <td data-bbox="1173 328 1809 4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문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보고서 목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 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참여 기술자 명단 </td> </tr> <tr> <td data-bbox="1003 488 1173 584">2. 안전점검의 개요</td> <td data-bbox="1173 488 1809 5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점검 수행 일정 </td> </tr> <tr> <td data-bbox="1003 584 1173 711">3. 자료수집 및 분석</td> <td data-bbox="1173 584 1809 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 여부 확인 · 그 밖에 관련자료 </td> </tr> <tr> <td data-bbox="1003 711 1173 839">4. 현장조사 및 시험</td> <td data-bbox="1173 711 1809 8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 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td> </tr> <tr> <td data-bbox="1003 839 1173 935">5. 시설물의 상태평가</td> <td data-bbox="1173 839 1809 9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상태등급 지정 </td> </tr> <tr> <td data-bbox="1003 935 1173 1070">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td> <td data-bbox="1173 935 1809 10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적 및 기능적 안정성 평가 </td> </tr> <tr> <td data-bbox="1003 1070 1173 1238">7. 종합결론 및 건의</td> <td data-bbox="1173 1070 1809 12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안전등급 지정(안전성 평가가 수행된 경우)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td> </tr> <tr> <td data-bbox="1003 1238 1173 1398">[부록]</td> <td data-bbox="1173 1238 1809 13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그 밖에 참고자료 </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1. 서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문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보고서 목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 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참여 기술자 명단 	2. 안전점검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 여부 확인 · 그 밖에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 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상태등급 지정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적 및 기능적 안정성 평가 	7. 종합결론 및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안전등급 지정(안전성 평가가 수행된 경우)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부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그 밖에 참고자료 	<p>○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보고서 포함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점검의 신뢰성 확보</p>
구분	내용																			
1. 서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문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보고서 목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 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참여 기술자 명단 																			
2. 안전점검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 여부 확인 · 그 밖에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 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상태등급 지정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적 및 기능적 안정성 평가 																			
7. 종합결론 및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안전등급 지정(안전성 평가가 수행된 경우)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부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그 밖에 참고자료 																			